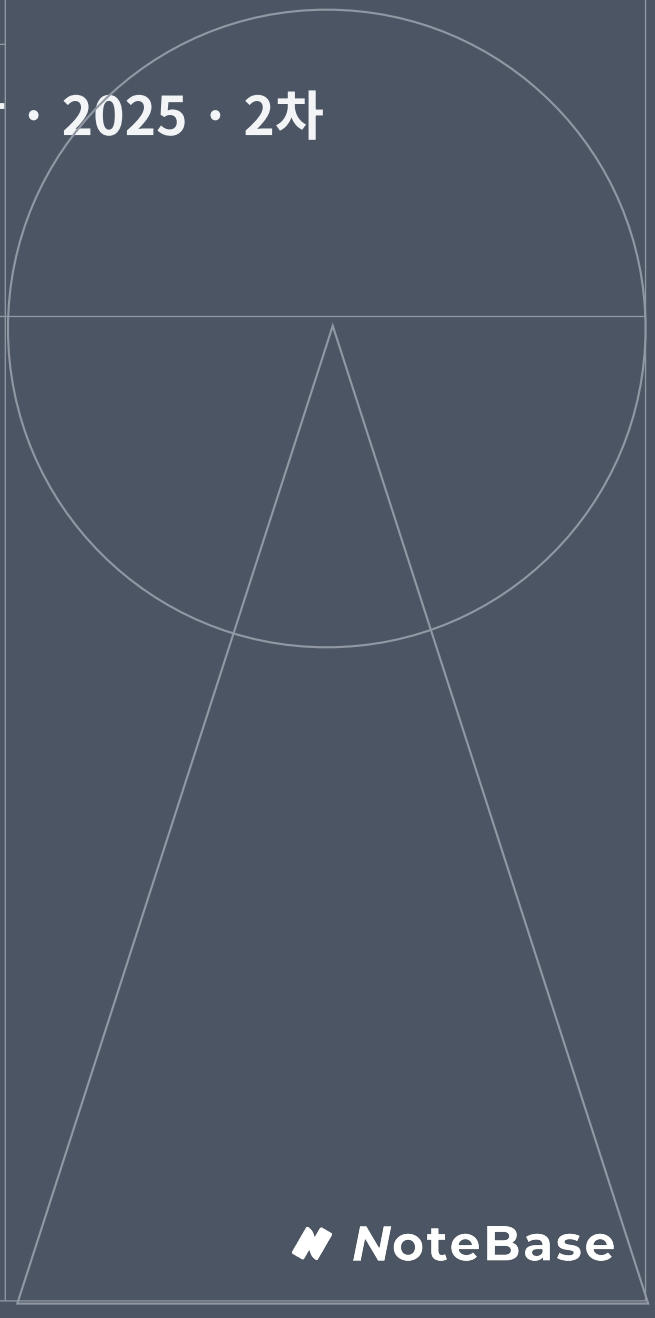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25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25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무역학 · 2025 · 2차

문 1. 신용장통일규칙(UCP600)상 조건변경(Amendment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신용장의 조건은 수익자가 조건변경을 통지한 은행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수락한다는 뜻을 알려줄 때까지는 수익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통지하는 은행은 조건변경을 송부한 은행에 조건변경 내용에 대한 수락 또는 거절의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건변경에 대하여 일부만을 수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조건변경 내용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로 본다.

④ 수익자가 일정한 시간 내에 조건변경을 거절하지 않으면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규정이 조건변경 내용에 있는 경우, 이는 유효한 조건변경이 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UCP600상 신용장 조건변경의 효력 발생 시점과 수익자의 수락·거절 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원신용장 유지, 부분수락 금지, 거절 간주 조항의 무시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조건변경 수락은 수익자가 변경된 내용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변경된 조건에 맞는 서류제시로 수락이 의제되는 것을 말한다. 부분수락은 변경사항 중 일부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원신용장은 수익자가 조건변경을 수락할 때까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수익자가 명시적으로 수락하지 않아도 변경된 조건에 맞는 제시를 하면 그 시점에 조건변경이 반영된다. 반면 일정 기간 안에 거절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구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무시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UCP600은 수익자가 조건변경을 통지한 은행에 수락 의사를 알릴 때까지 원신용장 조건이 수익자에게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원문은 원신용장의 조건 유지를 원칙으로 둔다.
② O: 조건변경을 통지한 은행은 수익자의 수락 또는 거절 통지를 받으면 이를 조건변경을 보내온 은행에 알려야 한다. 여기서 통보 대상은 수익자의 수락·거절 의사이다.
③ O: 조건변경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일부만 수락하면 전체 조건변경에 대한 거절 통지로 본다. 부분수락 허용 여부를 묻는 전형적 함정이다.
④ X: 수익자가 일정한 시간 내에 거절하지 않으면 조건변경이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은 유효한 조건변경 규정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유효한 조건변경이 된다는 부분이고, 올바르게는 그러한 조항은 무시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4번은 실무상 넣기 쉬운 미거절 시 자동효력 문구를 옳은 내용처럼 보이게 만든 함정이다. 2번도 통지은행 자신의 의사표시로 읽으면 흔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익자의 수락·거절 통지를 전달하는 의무를 말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건변경 문제에서는 먼저 수익자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지, 부분수락이 가능한지, 미거절 시 자동효력 조항을 인정하는지를 순서대로 본다. 자동효력 간주 문구가 나오면 틀린 선지 후보로 바로 좁힐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조건변경은 수익자 수락 전까지 원신용장 유지, 부분수락 불가, 미거절 자동효력 조항은 무시이다.

NoteBase

문 2. 국가 간 문화적 차이를 분석한 홉스테드(G. Hofstede)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 본성, 시간 지향성, 공간 지향성, 인간관계 등을 기준으로 문화 속성을 분류한다.

② 서구적 문화 지향성 관점에서는 과거에 수행했던 기업정책을 토대로 기업의 미래계획을 수립한다.

③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강한 문화에서는 법률이나 제도를 마련하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④ 저배경 문화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화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지고, 법률 서류가 보증서 역할을 하게 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홉스테드의 국가문화 차원과 다른 문화분류 모형의 개념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홉스테드: 국가문화를 권력거리,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 등의 차원으로 비교한 이론이다.
클럭혼·스트로드벡: 인간 본성, 인간과 자연의 관계, 시간 지향성, 인간관계 등을 기준으로 가치지향을 구분한 모형이다.
홀: 고배경·저배경 문화로 나누어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를 설명한 이론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 본성, 시간 지향성, 인간관계'라는 분류 기준은 홉스테드가 아니라 클럭혼·스트로드벡의 가치지향 모형이다. 틀린 표현은 홉스테드 모형과 연결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클럭혼·스트로드벡이 문화 속성을 그런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보아야 한다.
2번: X. 서구적 문화 지향성을 과거지향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맞지 않고, 이 진술도 홉스테드의 핵심 차원 설명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과거에 수행했던 기업정책을 토대로'이며, 올바르게는 서구 문화는 일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을 명시적으로 세우는 경향으로 설명하는 편이 타당하다.
3번: O. 홉스테드의 불확실성 회피는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을 얼마나 부담스럽게 느끼는가를 뜻한다.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강한 문화는 규칙, 법률, 제도, 절차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옳다.
4번: X. 저배경 문화에서 명시적이고 분명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문서 계약의 비중이 커진다는 설명 자체는 타당하지만, 이는 홉스테드가 아니라 홀의 고배경·저배경 문화 이론이다. 틀린 표현은 이를 홉스테드 모형 설명으로 연결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홀의 저배경 문화 설명이라고 보아야 한다.

오답 포인트

1번과 4번은 내용 자체는 각각 다른 학자의 이론으로 성립할 수 있어서 더 헷갈린다. 출제자는 '문화 차이'라는 공통 주제로 여러 모형을 섞어 놓고, 홉스테드의 대표 차원인 불확실성 회피를 정확히 아는지를 물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 이름이 나오면 먼저 대표 키워드를 바로 연결한다. 홉스테드는 문화 차원 비교, 클럭혼·스트로드벡은 가치지향, 홀은 고배경·저배경 의사소통으로 구분하면 빠르게 걸러진다.

암기 포인트

홉스테드 = 문화 차원 비교 = 불확실성 회피, 홀 = 고배경·저배경, 클럭혼·스트로드벡 = 가치지향 분류이다.

NoteBase

문 3. 다음 (가), (나)에 들어갈 항해용선계약의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은 적하·양하 비용 및 일체의 항비를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운임 조건이며,
(나)는 용선계약상 약정 기간 이전에 양하가 완료되었을 때 선주가 용선인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수이다.

① (가): Berth Term, (나): Despatch Money
② (가): Berth Term, (나): Demurrage
③ (가): Net Term, (나): Despatch Money
④ (가): Net Term, (나): Demurrage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항해용선계약에서 운임조건인 Berth Term과 Net Term, 체선료인 Demurrage와 조출료인 Dispatch Money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Berth Term은 적하·양하 비용과 항비를 선주가 부담하는 운임조건이다. Net Term은 적하·양하 관련 비용을 용선인이나 화주 측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Dispatch Money는 약정된 하역기간보다 빨리 끝났을 때 선주가 용선인에게 지급하는 보수이다. Demurrage는 약정된 하역기간을 초과했을 때 용선인이 선주에게 지급하는 지체보상금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가)의 설명은 적하·양하 비용 및 항비를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Berth Term에 해당한다. (나)의 설명은 약정 기간보다 먼저 양하가 끝났을 때 선주가 용선인에게 주는 보수이므로 Dispatch Money가 맞다.
2번: X. (가)는 Berth Term으로 맞지만, (나)를 Demurrage로 연결한 부분이 틀리다. Demurrage는 양하가 지연되어 약정기간을 넘겼을 때 용선인이 선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틀린 표현은 'Demurrage'이고, 올바르게는 'Dispatch Money'이다.
3번: X. (가)를 Net Term으로 본 부분이 틀리다. Net Term은 적하·양하 비용을 선주가 아니라 용선인이나 화주 측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나)의 Dispatch Money는 맞지만, (가)는 Net Term이 아니라 Berth Term이다.
4번: X. (가)와 (나) 모두 틀리다. Net Term은 적하·양하 비용을 선주가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 아니고, Demurrage도 조기 완료 보수가 아니라 지연에 대한 보상금이다. 틀린 표현은 '(가) Net Term, (나) Demurrage'이고, 올바르게는 '(가) Berth Term, (나) Dispatch Money'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Berth Term과 Net Term은 비용 부담 주체를, Dispatch Money와 Demurrage는 하역이 빨리 끝났는지 늦어졌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한다. 비용조건과 기간 초과·단축 보수를 서로 뒤섞으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보면 Berth Term과 Net Term을 가를 수 있다. 그다음 하역이 약정보다 빨리 끝났으면 Dispatch Money, 늦어졌으면 Demurrage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Berth Term은 선주 부담, Net Term은 용선인 측 부담, 빨리 끝나면 Dispatch Money, 늦어지면 Demurrage이다.

NoteBase

문 4.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전이라도 개설은행이 수입물품의 담보권을 보유하면서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을 처분하여 약정된 기간 내 수입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것은?

① Trust Receipt
② Letter of Indemnity
③ Authority to Pay
④ Letter of Instruction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입금융 수단 중에서 은행이 수입물품의 담보권을 유지한 채 수입업자에게 물품 처분을 허용하는 장치를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Trust Receipt는 은행이 수입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유지한 채 수입업자에게 물품 인수와 판매를 맡기고 약정기일에 대금을 회수하는 수입금융 방식이다. Letter of Indemnity는 서류 흠결이나 원본 서류 미제시 등으로 생길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보상장이다. Authority to Pay는 특정 대금을 지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지급위임 성격의 문서이다. Letter of Instruction은 은행이나 운송인에게 업무 처리 방법을 지시하는 문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Trust Receipt는 개설은행이 담보권을 유지하면서도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여 판매·처분하게 하고, 그 대금으로 약정기간 내 상환받는 방식이므로 발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Letter of Indemnity를 물품 처분을 위한 수입금융 수단처럼 본 점이다. Letter of Indemnity는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하겠다는 보상장이지, 올바르게는 은행이 담보권을 유지한 채 수입업자에게 처분을 허용하는 장치는 Trust Receipt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Authority to Pay를 담보부 화물처분 방식처럼 본 점이다. Authority to Pay는 대금 지급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에 가깝고, 올바르게는 수입물품을 먼저 처분하게 하면서 사후 상환을 받는 수입금융 장치는 Trust Receipt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Letter of Instruction을 담보권 유지형 수입금융으로 본 점이다. Letter of Instruction은 업무 처리나 서류 취급 방법을 지시하는 문서일 뿐이며, 올바르게는 은행 담보권 유지와 수입업자의 물품 처분을 함께 충족하는 것은 Trust Receipt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영문 명칭이 모두 문서처럼 보이므로 헷갈리기 쉽지만, 이 문항의 결정어는 '개설은행의 담보권 보유'와 '수입업자의 물품 처분 허용'이다. 이 두 요소가 동시에 나오면 단순 보상장이나 지시서가 아니라 Trust Receipt를 떠올려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입금융 문제에서 은행이 화물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면서 수입업자에게 먼저 물품을 찾아가 판매하게 하고 나중에 상환받는 구조가 보이면 Trust Receipt로 판단한다. 손해배상 약정이면 Letter of Indemnity, 지급권한 부여이면 Authority to Pay, 업무처리 지시이면 Letter of Instruction으로 구분된다.

암기 포인트

Trust Receipt는 담보권은 은행에 남기고 물품 처분은 수입업자에게 맡긴 뒤 나중에 상환받는 방식이다.

NoteBase

문 5. 버논(R. Vernon)의 제품수명주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입기 단계는 제품의 표준화 전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으므로 독점가격 전략에 따라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② 성장기 단계에서는 제품의 표준화가 진전되면서 대량생산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고 가격하락이 이루어진다.

③ 성숙기 단계에서는 기술의 표준화가 완전히 이루어져 미숙련 노동으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해지므로, 기술선도국에서 저개발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다.

④ 쇠퇴기 단계에서는 선진국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사양화로 인해 더 이상의 기술개발이나 마케팅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버논의 제품수명주기이론에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생산지 이동과 수출 방향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버논의 제품수명주기이론은 신제품이 기술선도국에서 먼저 개발되고, 표준화가 진행될수록 생산거점이 저임금 국가로 이동한다는 설명이다. 도입기에는 차별화된 신제품이라 고가 판매가 가능하고, 성장기에는 표준화와 대량생산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다른 선진국에서도 수요가 늘어 현지 생산이 시작되어 기술선도국의 독점적 지위가 약해진다. 성숙기에는 표준화가 거의 완료되어 생산이 후발국으로 이전되고, 쇠퇴기에는 선진국 시장에서 사양화되어 추가 투자 유인이 약해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도입기는 제품이 아직 표준화되기 전 단계이므로 혁신기업이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아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② O: 성장기에는 제품 표준화가 진전되고 생산공정이 안정되므로 대량생산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다. 그 결과 가격이 하락한다는 설명은 맞다. 아울러 성장기에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수요가 늘어 그곳에서 현지 생산이 시작되므로, 생산이 기술선도국 한 곳에서 여러 선진국으로 확산되고 기술선도국의 독점적 지위가 약해진다는 점도 이 단계의 특징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기술선도국에서 저개발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표현이다. 성숙기에는 기술이 표준화되어 미숙련 노동으로도 생산이 가능해지므로 생산거점이 저임금의 후발국으로 이동한다. 올바르게는 저개발국이 해당 제품의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고, 기술선도국은 오히려 수입국으로 바뀔 수 있다.
④ O: 쇠퇴기에는 선진국 시장에서 해당 제품이 사양화되어 추가적인 기술개발이나 마케팅 투자 유인이 크게 줄어든다. 제품이 일반화된 뒤에는 기업의 관심이 신규 제품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제시문 취지는 타당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성숙기와 쇠퇴기를 둘 다 '표준화가 끝난 단계'로만 외우면 ③과 ④가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성숙기의 핵심은 생산거점과 수출 주체가 선진국에서 후발국으로 이동한다는 점이고, ③은 바로 그 방향을 거꾸로 적어 놓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버논 이론은 단계 이름보다 생산 위치와 무역 방향의 변화를 먼저 본다. 도입기는 선진국 개발·고가 판매, 성장기는 표준화·가격하락과 다른 선진국으로의 생산 확산, 성숙기는 후발국 생산 확대, 쇠퇴기는 선진국 사양화로 정리하면 선지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버논은 신제품은 선진국에서 시작하고, 표준화될수록 생산과 수출의 중심이 후발국으로 이동한다고 본다.

NoteBase

문 6. 신용장통일규칙(UCP600)상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개설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은행은 개설의뢰인의 비용과 위험하에 하는 것이다.
ㄴ. 개설은행이나 통지은행은 비록 자신의 판단하에 다른 은행을 선정하였더라도 그가 다른 은행에 전달한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ㄷ. 다른 은행에 서비스의 이행을 요청하는 은행은 그러한 지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른 은행의 요금, 보수, 경비 또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ㄹ. 신용장이 수수료가 수익자의 부담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그 수수료가 신용장 대금에서 징수되거나 공제될 수 없는 경우, 개설은행은 그 수수료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UCP600상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관한 면책에서 신청인 위험 부담, 타은행 미이행 책임, 타은행 수수료 부담, 수익자 부담 수수료의 최종 책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UCP600상 다른 은행을 이용해 신청인의 지시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계산과 위험으로 이루어진다. 개설은행이나 통지은행이 다른 은행을 스스로 선정했더라도 그 은행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반면 다른 은행에 서비스를 요청한 은행은 그 지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보수, 경비,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용장에서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으로 정했어도 그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면 개설은행이 최종적으로 그 수수료를 부담한다. 따라서 진술별 판단은 ㄱ O, ㄴ O, ㄷ X, ㄹ O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①은 ㄱ, ㄷ만 옳다고 본 조합이다. ㄱ은 맞지만 ㄷ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ㄷ의 '책임이 없다'이고, 올바르게는 다른 은행에 서비스 이행을 요청한 은행은 그 지시와 관련한 수수료, 보수, 경비, 비용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② X: ②는 ㄴ, ㄹ만 옳다고 본 조합이다. ㄴ과 ㄹ은 맞지만 ㄱ도 옳으므로 조합이 불완전하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ㄹ이다.
③ O: ③은 ㄱ, ㄴ, ㄹ이 옳다고 본 조합이다. ㄱ은 다른 은행 이용이 신청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맞다. ㄴ은 개설은행이나 통지은행이 스스로 다른 은행을 선택했더라도 그 은행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맞다. ㄹ은 수익자 부담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면 개설은행이 그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맞다.
④ X: ④는 ㄱ, ㄷ, ㄹ이 옳다고 본 조합이다. ㄱ과 ㄹ은 맞지만 ㄷ이 틀리므로 전체 조합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ㄷ의 '책임이 없다'이고, 올바르게는 지시한 은행이 해당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ㄴ의 '다른 은행을 스스로 선정하였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문구를 직관에 반한다고 보아 틀린 진술로 오해하기 쉽다. 반대로 ㄷ은 비용 문제이므로 신청인 부담이라고 단순화하면 맞는 진술처럼 보이지만, UCP600은 다른 은행에 서비스를 요청한 은행의 수수료 책임을 별도로 둔다. 위험 귀속과 수수료 지급 책임을 같은 축으로 보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먼저 위험과 비용의 주체를 나누어 본다.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의 위험은 신청인에게 귀속되고, 다른 은행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은 개설은행이나 통지은행이 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은행이 다른 은행에 서비스를 요청하면서 발생한 수수료와 비용은 요청한 은행이 책임진다고 구분하면 조합을 바로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타은행 이용의 위험은 신청인 부담, 타은행 비용 청구는 지시한 은행 부담, 회수 불능 수익자 수수료는 개설은행 부담이다.

NoteBase

문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상 물품의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그 물품을 거절하기 위하여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그 비용이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제3자의 창고에 임치하여야 한다.

③ 물품이 급속히 훼손되기 쉽거나 그 보관에 불합리한 경비를 요하는 경우, 물품을 보관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물품을 매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물품을 매각한 당사자는 매각대금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매각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CISG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의 물품 보관의무, 보관비용의 귀속, 매각 가능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제3자 창고 임치 비용이 자신의 비용이 아니라 상대방의 비용이라는 점과, 일정한 경우 매각 및 비용 공제가 허용된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물품의 보관은 인도된 물품을 임의로 방치하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존하는 조치를 뜻한다. 거절은 계약이나 협약상 권리를 행사하여 그 물품을 받지 않거나 되돌리는 법적 조치를 뜻한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물품을 보관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보존조치를 취한다. 다만 CISG 제87조에 따르면 제3자의 창고에 임치할 수는 있어도 그 비용은 자신의 비용이 아니라 상대방의 비용이다. 또 CISG 제88조에 따르면 급속히 훼손되기 쉽거나 보관비가 불합리하게 큰 경우에는 매각을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보관비와 매각비를 공제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뒤 그 물품을 거절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보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CISG 제86조 제1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② X
CISG 제87조는 보관의무자가 물품을 제3자의 창고에 임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그 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따라서 선지의 '자신의 비용으로'라는 표현이 틀렸다.
틀린 표현: 자신의 비용으로
올바른 표현: 상대방의 비용으로 물품을 제3자의 창고에 임치할 수 있다.

③ O
물품이 급속히 훼손되기 쉽거나 보관에 불합리한 경비가 드는 경우에는 보관의무자가 매각을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는 CISG 제88조 제2항의 취지와 같다.

④ O
물품을 매각한 당사자는 매각대금에서 물품 보관 및 매각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상당액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이는 CISG 제88조 제3항의 내용과 일치하며, 나머지 금액은 상대방에게 계산하여 주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보관의무 자체와 비용 귀속을 같은 방향으로 외우면 ②에 걸리기 쉽다. 보관의무를 지는 사람이 실제 조치를 취하더라도, 제3자 창고 임치 비용은 제87조상 상대방의 부담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CISG의 물품 보관 문제는 누가 보관조치를 해야 하는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매각이 가능한지 또는 필요한지를 순서대로 본다. 제87조는 비용 귀속을 묻는 조문이고, 제88조는 매각 허용 또는 매각 필요와 비용 공제까지 이어지는 조문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CISG 보관은 보존조치, 창고비는 상대방 부담, 급속훼손이면 매각, 매각대금에서는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

NoteBase

문 8.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곡물류 거래에 사용되는 Tale Quale은 운송 중의 변질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조건이다.

② 과부족용인조항은 계약 물품의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 등의 표현을 추가하여 수량을 결정하는 조항이다.

③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고한도액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에 약정된 금액이다.

④ 수취선하증권을 사용하는 경우, 화물 수취 후 선적되었음을 나타내는 'on board notation'에 표시된 일자가 선적일로 간주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가운데 품질조건, 수량조건, 해상보험 용어, 선하증권상 선적일 판단기준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Tale Quale는 곡물류 거래에서 선적 시점의 품질이나 상태를 기준으로 보는 조건으로, 운송 중 변질을 매도인이 전부 책임지는 조건이 아니다.
과부족용인조항은 계약수량에 일정 범위의 초과나 부족을 허용하는 수량조건으로, 보통 일정 비율의 more or less 형태로 정한다.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평가액으로서 보험의 목적물 가치이고, 보험금액은 당사자가 약정한 보상한도액이다.
수취선하증권은 화물을 수취한 사실만 먼저 표시한 선하증권이므로, 실제 선적일은 on board notation에 적힌 일자로 판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운송 중의 변질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이다. Tale Quale는 곡물류 거래에서 품질을 선적 당시 기준으로 다루는 조건이므로 운송 중 변질위험을 매도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뜻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운송 중 상태변화까지 매도인이 모두 책임지는 조건이 아니라 선적 당시의 품질기준을 중시하는 조건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 등의 표현을 추가하여 수량을 결정하는 조항"이다.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 등을 붙이는 방식은 과부족용인조항이 아니라 별개의 개산수량조건(대략표현)에 해당한다. UCP600 제30조 a항은 about, approximately 등이 수량 등에 붙으면 10퍼센트 이내의 과부족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규정하여 이 표현 자체에 일률적 허용범위를 부여한다. 반면 과부족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5퍼센트 등 구체적 비율을 직접 약정하여 그 범위의 초과나 부족을 인정하는 조항이다. 올바르게는 과부족용인조항은 계약수량에 당사자가 정한 일정 퍼센트의 과부족 허용범위를 두는 수량조건이며, about, approximately 표현으로 수량을 결정하는 조항은 개산수량조건으로 구별된다.
③ X: 틀린 부분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고한도액"과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에 약정된 금액"이다. 이는 보험가액이 아니라 보험금액의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객관적 가치이고, 보험금액은 계약상 보상한도액이다.
④ O: 수취선하증권은 화물을 인수한 사실만 적힌 문서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실제 선적완료일이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었음을 표시하는 on board notation이 있으면 그 기재일을 선적일로 본다.

오답 포인트

③에서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을 바꿔 묻는 함정이 가장 전형적이다. ①도 Tale Quale를 막연히 "품질보증 강화조건"처럼 읽으면 틀리기 쉽고, ②는 대략표현과 과부족 허용조항을 같은 것으로 섞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역계약 용어 문제는 먼저 품질조건인지 수량조건인지 운송서류 조건인지 보험조건인지 범주를 나눈 뒤, 각 용어가 무엇의 기준을 정하는 말인지 확인하면 된다. 특히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처럼 비슷한 용어는 목적물의 가치인지 계약상 한도액인지부터 구분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보험가액은 목적물 가치, 보험금액은 보상 한도, 수취선하증권의 선적일은 on board notation 일자이다.

NoteBase

문 9. 동일 물품의 해외시장 간 가격 차이에 편승함으로써 특정 기업의 제품을 저가시장에서 구입하고, 이를 고가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의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유통업체들로 구성된 시장은?

① Black Market

② Niche Market

③ White Market

④ Grey Market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해외시장 간 가격차를 이용한 병행수입 유통인 그레이 마켓과 다른 시장 개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Grey Market: 제조사의 공식 유통망 밖에서 국가·시장 간 가격차를 이용해 정품을 저가시장서 들여와 고가시장에 재판매하는 시장이다. 키워드는 병행수입, 가격차, 비공식 유통이다.
Black Market: 금지품·밀수품·불법거래품 등이 유통되는 불법시장이다. 키워드는 불법 거래이다.
Niche Market: 특정 소수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틈새시장이다. 키워드는 세분시장, 특수수요이다.
White Market: 제조사 또는 제도권의 공식 유통질서 안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일반 시장이다. 키워드는 공식 유통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Black Market은 불법거래 시장을 뜻한다. 문제의 상황은 정품을 저가시장서 사서 고가시장에 재판매하는 가격차 활용 유통이므로 불법시장 개념과 다르다. 틀린 표현은 가격 차이에 편승한 유통시장을 Black Market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불법·밀거래가 개입될 때 Black Market이라고 한다.
2번 X: Niche Market은 특정한 취향이나 소규모 고객집단을 겨냥한 틈새시장이다. 문제는 수요층의 세분이 아니라 시장 간 가격차를 이용한 유통방식을 묻는다. 틀린 표현은 가격차 거래시장을 Niche Market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특정 고객층 중심의 세분시장이 Niche Market이다.
3번 X: White Market은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유통망 안의 시장을 뜻한다. 문제는 공식 유통망 밖에서 정품을 우회 유통하는 병행수입 시장이므로 White Market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비공식 가격차 유통을 White Market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공식 유통망을 통한 일반 거래가 White Market이다.
4번 O: Grey Market은 동일 상품의 국가별 가격차를 이용해 저가시장서 구입한 정품을 공식 대리점이 아닌 경로로 고가시장에 재판매하는 시장이다. 제시문은 바로 이 병행수입형 유통을 설명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학생들이 Black Market과 Grey Market을 모두 공식 유통 바깥의 시장으로만 묶어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Black은 불법성 자체가 핵심이고, Grey는 정품이지만 공식 유통망 밖에서 가격차를 이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장 개념 문제에서는 먼저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본다. 불법성이 핵심이면 Black Market이고, 특정 소수 수요층이면 Niche Market이며, 공식 유통망이면 White Market이다. 정품을 시장 간 가격차 때문에 비공식 경로로 재판매하면 Grey Market이다.

암기 포인트

가격차+정품+비공식 유통은 Grey, 불법거래는 Black, 틈새수요는 Niche, 공식유통은 White이다.

NoteBase

문 10. 기업의 해외시장 진입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라이센싱(Licensing)은 특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상표, 노하우, 디자인 등을 일정 기간 다른 기업에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받는 계약형태이다.

② 턴키 플러스(Turnkey Plus)는 수주자가 발전소, 생산공장, 산업설비 등을 건설하여 가동할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경영관리나 근로자 훈련 등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계약형태이다.

③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OEM)은 주문자가 설계와 개발능력을 갖춘 제조자에게 제품의 생산을 주문하면 제조자는 제품을 개발·생산하여 주문자에게 납품하고, 주문자는 이 제품을 직접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계약형태이다.

④ 경영관리계약(Management Contract)은 경영에 관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이 자금이나 설비를 보유한 다른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형태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해외시장 진입방식 중 라이선싱, 턴키 플러스, OEM, 경영관리계약의 정의와 특히 OEM과 ODM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라이선싱은 특허·상표·노하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는 방식이다. 턴키 플러스는 완공·가동 가능한 설비를 인도한 뒤 운영관리나 훈련까지 추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OEM은 주문자가 상표와 제품 사양을 제시하면 제조자가 그에 맞춰 생산해 납품하는 방식이고, ODM은 제조자가 제품 개발까지 맡는 방식이다. 경영관리계약은 경영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 타기업의 경영을 맡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라이선싱은 지식재산권이나 노하우의 사용을 허락하고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계약형태이므로 설명이 맞다.
2번: O. 턴키 플러스는 가동 가능한 상태의 설비 인도에 더해 경영관리, 기술지원, 근로자 훈련 같은 후속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방식이므로 설명이 맞다.
3번: X. 틀린 부분은 "제조자는 제품을 개발·생산"이다. OEM은 주문자가 제시한 상표와 사양에 따라 제조자가 생산하는 방식이고, 제조자가 제품 개발까지 맡는 방식은 ODM에 가깝다. 올바르게는 "주문자가 제품 사양이나 설계를 제시하고 제조자가 이에 맞춰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납품하며, 주문자는 이를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4번: O. 경영관리계약은 경영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 자본이나 설비를 가진 기업의 경영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계약형태이므로 설명이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라는 말 때문에 OEM과 ODM을 함께 묶어 외우면 3번처럼 "제조자가 개발까지 한다"는 문장에 속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생산 위탁과 개발 주체를 뒤섞은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외시장 진입방식 문제에서는 먼저 무엇을 넘기는지와 누가 개발·생산·경영을 담당하는지를 본다. 지식재산 사용 허락이면 라이선싱, 완공 설비 인도면 턴키, 개발 주체가 제조자이면 ODM, 주문자 사양에 따른 생산이면 OEM, 경영 노하우 제공이면 경영관리계약으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OEM은 주문자 사양 생산, ODM은 제조자 개발 생산, 라이선싱은 권리 사용 허락, 경영관리계약은 경영만 맡고 보수를 받는 방식이다.

NoteBase

문 11. 국제재무관리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경제적 환노출(Economic Exposure)은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외국 자회사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사 소재 국가의 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가능성을 말한다.
ㄴ. 리딩(Leading)은 자국통화의 평가절상이 예상되는 경우 외화부채의 지급을 늦추고, 자국통화의 평가절하가 예상되는 경우 외화채권의 수취를 늦추는 방법을 말한다.
ㄷ. 네팅(Netting)은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현지 자회사 간에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를 상쇄하고, 차액만을 일정 기간마다 결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ㄹ. 이전가격(Transfer Price)은 본사와 자회사 간 또는 자회사 상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제재무관리의 기본 용어인 경제적 환노출, 환산노출, 리딩·래깅, 네팅, 이전가격의 정의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경제적 환노출은 환율 변동이 기업의 장기적인 영업현금흐름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실질적 노출이다.
환산노출은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보고통화로 환산할 때 생기는 회계상 노출이다.
리딩은 외화채권의 수취나 외화채무의 지급 시점을 앞당기는 방법이고, 래깅은 그 시점을 늦추는 방법이다.
네팅은 계열회사 간 채권·채무를 상계한 뒤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전가격은 본사와 자회사 간 또는 자회사 상호 간 내부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ㄱ, ㄴ의 조합이다. ㄱ은 경제적 환노출이 아니라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사 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환산노출의 설명이므로 틀리다. ㄴ도 지급과 수취를 늦추는 방법을 말하고 있으므로 리딩이 아니라 래깅의 설명이어서 틀리다.
2번 X: ㄱ, ㄷ의 조합이다. ㄷ은 본사와 자회사 간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상계해 차액만 일정 기간마다 결제하는 네팅의 설명이므로 맞다. 그러나 ㄱ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 ㄱ의 올바른 표현은 '경제적 환노출은 환율 변동이 미래 영업현금흐름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다.
3번 X: ㄴ, ㄹ의 조합이다. ㄹ은 계열회사 간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인 이전가격의 설명이므로 맞다. 그러나 ㄴ은 리딩을 래깅처럼 설명했으므로 틀리다. 올바르게는 '리딩은 지급 또는 수취 시점을 앞당기는 방법'이다.
4번 O: ㄷ, ㄹ의 조합이다. ㄷ은 네팅, ㄹ은 이전가격의 정의를 각각 정확히 설명하므로 옳은 조합이다.

오답 포인트

경제적 환노출을 환산노출과 혼동하거나, 리딩과 래깅을 시점 조정이 아니라 방향감만으로 외우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ㄱ의 '연결재무제표 환산'과 ㄴ의 '늦추고, 늦추는'이라는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재무제표 환산 문제인지 기업가치와 현금흐름 문제인지부터 구분한다. 다음으로 지급·수취를 앞당기면 리딩, 늦추면 래깅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네팅은 차액결제, 이전가격은 계열사 내부거래 가격으로 정리하면 조합형 보기에서도 바로 걸러진다.

암기 포인트

경제적 환노출은 기업가치, 환산노출은 재무제표, 리딩은 앞당김, 래깅은 늦춤, 네팅은 차액결제, 이전가격은 내부거래 가격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가), (나)에 들어갈 표준품매매 조건의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는 주로 곡물이나 과일과 같은 농산물과 광산물 등의 매매에 이용되며, 전년도 수확물의 평균중등품을 품질의 기준으로 삼고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당해 연도 수확물의 평균중등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다.
(나)는 원목, 냉동수산물 등과 같이 외관상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그 내부가 부식되는 등 잠재 하자 가능성이 높은 물품이 도착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시 판매 적격성을 매도인이 보증하는 조건이다.

① (가): FAQ, (나): GMQ
② (가): FAQ, (나): USQ
③ (가): GMQ, (나): FAQ
④ (가): GMQ, (나): USQ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표준품매매 조건인 FAQ, GMQ, USQ의 정의와 적용 대상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FAQ는 농산물·광산물 거래에서 전년도 수확물의 평균중등품을 기준으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당해 연도 수확물의 평균중등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다. GMQ는 원목·냉동수산물처럼 외관만으로 품질 판단이 어려운 물품에 대해 도착지 인도 시 판매적격성을 매도인이 보증하는 조건이다. USQ는 특정 산지나 시장에서 통상 인정되는 표준품질을 뜻하는 조건으로, 도착지에서의 판매적격성 보증과는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는 FAQ이고 (나)는 GMQ이므로 연결이 맞다. FAQ는 전년도 평균중등품을 참고해 계약하고 당해 연도 평균중등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며, GMQ는 도착지에서 판매 가능한 품질임을 보증하는 조건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나)=USQ'이다. (나)는 숨은 하자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도착지 인도 시 판매적격성을 보증하는 조건이므로 GMQ가 맞다. USQ는 통상표준품질을 뜻할 뿐 도착지 판매적격성 보증 조건이 아니다.
③ X: 틀린 부분은 '(가)=GMQ, (나)=FAQ'이다. (가)는 GMQ가 아니라 FAQ이다. (나)는 FAQ가 아니라 GMQ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가)=GMQ, (나)=USQ'이다. 올바르게는 '(가)=FAQ, (나)=GMQ'이다.

오답 포인트

FAQ와 USQ 모두 품질 기준을 말하는 용어처럼 보여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FAQ는 전년도 평균중등품을 참고하는 농산물·광산물 거래 조건이고, GMQ는 도착지에서의 판매적격성 보증이 핵심이므로 '도착지 보증'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GMQ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년도 수확물의 평균중등품을 기준으로 계약하고 당해 연도 평균중등품을 인도한다는 설명이 나오면 FAQ로 판단한다. 숨은 하자 가능성이 큰 물품에 대해 도착지 인도 시 판매적격성을 보증한다는 설명이 나오면 GMQ로 판단한다. 단순히 통상적인 표준품질을 뜻하면 USQ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FAQ는 평균중등품, GMQ는 도착지 판매적격성 보증, USQ는 통상표준품질이다.

NoteBase

문 1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해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은?

① 하자보완청구권

② 물품명세확정권

③ 대금감액청구권

④ 대체물품인도청구권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CISG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매수인 구제수단과 매도인 구제수단의 주체를 정확히 나누는 것이다.

용어 풀이

물품명세확정권은 계약상 매수인이 물품의 형상, 치수, 기타 특성을 지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그 명세를 스스로 확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핵심 구분

CISG에서 하자 있는 물품에 대한 수리청구권, 대금감액권, 대체물품인도청구권은 매수인의 구제수단이다. 반면 매수인이 물품의 형상·치수·기타 특성을 지정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스스로 명세를 확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 중 매도인의 구제권은 2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하자보완청구권은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는 성질의 구제수단이다.
틀린 표현: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
올바른 표현: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수리청구권이다.

② O
물품명세확정권은 매수인이 계약상 정하여야 할 물품의 형상, 치수, 기타 특성을 정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해당한다.

③ X
대금감액청구권은 인도된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을 때 매수인이 대금을 감액하는 권리이다.
틀린 표현: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
올바른 표현: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대금감액권이다.

④ X
대체물품인도청구권은 계약위반이 본질적일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체물품의 인도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틀린 표현: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권
올바른 표현: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대체물품인도청구권이다.

오답 포인트

하자보완, 대금감액, 대체물품인도는 모두 하자 있는 급부를 받은 매수인 쪽의 구제수단인데, 문제는 이를 매도인의 구제권과 섞어 놓았다. ②만 매수인이 해야 할 명세지정을 하지 않았을 때 매도인이 대응하는 권리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CISG 구제수단 문제는 먼저 누가 계약을 위반했는지, 그 다음 누가 구제를 행사하는지부터 본다. 물품 하자에 대한 수리·감액·대체인도는 매수인, 매수인의 명세지정 불이행에 대한 명세확정은 매도인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하자 구제는 매수인, 명세 미지정 대응은 매도인이다.

NoteBase

문 14. 무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아담 스미스(A. Smith)의 절대우위론은 한 국가가 두 재화의 생산에 모두 절대우위가 있더라도 양국이 서로 다른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다면 무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② 레온티에프(W. Leontief)는 헥셔-올린(E. Heckscher-B. Ohlin)의 요소가격균등화정리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헥셔-올린이 주장한 명제가 모순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③ 린더(S. Linder)의 대표적 수요이론은 자국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상품의 교역조건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④ 포스너(M. Posner)와 후프바이어(G. Hufbauer)의 기술격차이론은 무역의 발생 원인을 기술선진국과 기술모방국 사이에 존재하는 기술격차를 전제로 설명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무역이론의 대표 학자와 핵심 명제를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아담 스미스: 절대우위론 — 각국이 절대적으로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에 특화할 때 무역이익이 생긴다고 본다.
리카도: 비교우위론 — 한 나라가 두 재화 모두에서 절대우위를 가져도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재화가 다르면 무역이 가능하다고 본다.
레온티에프: 레온티에프 역설 — 미국의 수출이 자본집약적일 것이라는 헥셔-올린의 예측과 달리 노동집약적으로 나타난 실증결과를 말한다.
린더: 대표적 수요이론 — 1인당 소득수준과 수요구조가 비슷한 나라끼리 공산품 무역이 활발하다고 본다.
밀: 상호수요이론 — 자국상품에 대한 외국수요와 외국상품에 대한 자국수요가 맞서는 지점에서 교역조건이 결정된다고 본다.
포스너·후프바이어: 기술격차이론 — 기술혁신국과 기술모방국 사이의 기술격차와 모방시차가 존재하는 동안 무역이 발생한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은 … 양국이 서로 다른 재화에 비교우위가 있다면 무역이 발생한다"는 연결이다. 한 나라가 두 재화 모두에서 절대우위를 가지더라도 비교우위 차이로 무역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다. 절대우위론은 각국이 절대우위를 가진 재화에 특화한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요소가격균등화정리를 실증적으로 검증"이라는 표현이다. 레온티에프가 실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헥셔-올린의 요소부존도에 따른 무역패턴 예측이며, 미국 수출이 자본집약적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노동집약적으로 나타난 역설을 제시하였다. 요소가격균등화정리를 검증한 것으로 쓰면 틀리다.
③ X. 틀린 부분은 "린더의 대표적 수요이론은 … 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교역조건이 결정된다"는 부분이다. 자국상품과 외국상품에 대한 상호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교역조건이 정해진다는 설명은 밀의 상호수요이론이다. 린더 이론은 소득수준과 수요구조가 비슷한 국가 사이에서 공산품 무역이 활발하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포스너와 후프바이어의 기술격차이론은 기술선진국이 신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기술모방국이 이를 뒤따라 모방하는 과정에서 두 나라 사이의 기술격차가 무역의 발생원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섞어 놓은 함정이고, ③은 수요라는 단어만 보고 린더와 밀을 혼동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②는 헥셔-올린의 여러 명제 가운데 실증적으로 문제 된 대상을 바꿔 놓은 문장이라서 학자 이름만 외우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학자명 다음에 대표 키워드를 바로 붙여 판단하면 된다. 스미스는 절대우위, 리카도는 비교우위, 레온티에프는 역설, 린더는 유사한 수요구조, 밀은 상호수요에 의한 교역조건, 포스너·후프바이어는 기술격차로 연결하면 빠르게 판별된다.

암기 포인트

스미스=절대우위, 리카도=비교우위, 린더=유사수요, 밀=상호수요, 포스너·후프바이어=기술격차이다.

NoteBase

문 15. 포터(M. Porter)가 제시한 가치사슬(Value Chain) 모형에서 기업의 주활동부문(Primary Activities)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물류
ㄴ. 법률서비스
ㄷ. 고객서비스
ㄹ. 기술 연구개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포터의 가치사슬에서 주활동과 지원활동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활동은 제품의 생산·이동·판매·사후서비스처럼 가치 창출의 흐름에 직접 연결되는 활동이다. 주활동 5가지는 입고물류(inbound logistics), 운영(operations), 출고물류(outbound logistics), 마케팅 및 판매(marketing & sales), 서비스(service)이다. 여기서 물류는 원재료를 들여오는 입고물류와 완제품을 내보내는 출고물류로 나뉘며, 둘 다 주활동에 속한다. 지원활동 4가지는 기업하부구조(인프라), 인적자원관리, 기술개발, 조달이며 주활동이 작동하도록 뒷받침하는 활동이다. 물류와 고객서비스는 주활동이고, 법률서비스와 기술 연구개발은 지원활동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ㄱ 물류는 주활동이 맞지만 ㄴ 법률서비스는 기업하부구조에 속하는 지원활동이다. 틀린 부분은 ㄴ을 주활동에 넣은 점이다. 올바르게는 ㄱ, ㄷ이 주활동이다.
2번 O: ㄱ 물류는 가치사슬의 물류활동으로 주활동에 해당하고, ㄷ 고객서비스도 판매 후 서비스를 포함하는 주활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ㄱ, ㄷ을 고른 2번이 옳다.
3번 X: ㄴ 법률서비스와 ㄹ 기술 연구개발은 모두 지원활동이다. 틀린 부분은 두 항목을 주활동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둘 다 지원활동이다.
4번 X: ㄷ 고객서비스는 주활동이지만 ㄹ 기술 연구개발은 기술개발로서 지원활동이다. 틀린 부분은 ㄹ을 주활동에 포함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ㄷ과 함께 묶일 주활동은 ㄱ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기술개발이 기업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로 주활동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가치사슬에서 주활동 여부는 중요도의 크기가 아니라 가치 창출 과정에 직접 붙어 있는지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에서 판매 후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흐름에 직접 들어가면 주활동이고, 그 흐름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하면 지원활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물류·운영·마케팅·서비스는 주활동이고, 인프라·인사·기술개발·조달은 지원활동이다.

NoteBase

문 16. 국제 프랜차이징(Franchis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호, 상표, 기술 등의 사용권을 가맹점에 허용하고 조직, 마케팅 및 일반관리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② 국제 프랜차이징 계약은 라이센싱 계약과는 달리 가맹점과의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신규 개발 기술은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③ 해외직접투자와 달리 이익의 일부만을 로열티 형태로 확보한다는 면에서 현지 시장에서의 이익 창출이 제한된다.

④ 가맹점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가맹점을 통제하기 어렵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제 프랜차이징이 라이선싱이나 해외직접투자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프랜차이징은 가맹본부가 상표·상호·운영방식·노하우를 패키지로 제공하고 가맹점은 그 표준방식에 따라 영업하면서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라이선싱은 특정 권리나 기술의 사용허락이 중심이고, 해외직접투자는 본사가 현지 사업을 직접 소유·통제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국제 프랜차이징은 가맹본부가 자신의 상호, 상표, 기술, 운영기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마케팅과 관리기법까지 지원하는 사업방식이므로 옳다. 단순 상표 사용허락이 아니라 사업운영 전반의 지원이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2번 X: 틀린 부분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신규 개발 기술은 이전 대상이 아니다"라는 표현이다. 실제로 프랜차이징 계약은 가맹점의 영업방식을 통일하기 위해 비교적 표준화된 계약과 운영매뉴얼을 전제로 하며, 상표뿐 아니라 운영노하우와 기술도 이전 대상이 된다.
3번 O: 해외직접투자는 현지 사업의 소유를 통해 이익을 직접 확보하지만, 프랜차이징은 통상 로열티나 수수료 형태로 일부 수익만 확보하므로 현지시장 전체 이익을 직접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
4번 O: 가맹점은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계약으로 정한 범위 밖의 사항까지 본부가 직접 지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가맹점을 통제하기 더 어렵다는 설명이 맞다.

오답 포인트

라이선싱과 프랜차이징을 모두 권리 사용허락 계약으로만 보면 2번에 속기 쉽다. 프랜차이징은 개별 권리 허락이 아니라 표준화된 사업방식과 운영노하우를 묶어서 이전한다는 점이 구별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이전 대상이 개별 권리인지 사업방식 패키지인지 구분하고, 다음으로 계약의 표준화 정도와 본부의 통제력, 마지막으로 수익 회수방식이 로열티인지 직접 사업이익인지 순서대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프랜차이징은 표준화된 사업방식 패키지와 로열티, 라이선싱은 개별 권리 허락, 해외직접투자는 직접 소유와 직접 통제이다.

NoteBase

문 17.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은 동일 재화는 어디에서나 동일 가격이어야 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전제로 한다.

②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에 의하면 일정 기간 두 통화 간 환율의 % 변화는 두 국가 물가수준의 % 변화 간 차이와 일치한다.

③ 무역장벽이 존재하고 수송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면 절대적 구매력평가설도 성립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절대적 구매력평가설과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의 성립 조건과 포함관계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은 동일한 재화 바스켓의 가격수준이 국가 간 환율로 환산하면 같아져야 한다는 수준 개념이다.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은 두 나라의 물가상승률 차이만큼 환율이 변한다는 변화율 개념이다.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이 더 강한 명제이고,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은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이 엄격하게 성립하지 않아도 장기적 변화율 차원에서 성립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1번: O.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은 일물일가의 법칙을 여러 재화로 확장한 생각이다. 같은 재화나 동일한 재화묶음은 환율로 환산하면 같은 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둔다.
2번: O.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은 일정 기간 환율의 변동률이 두 나라 물가상승률의 차이와 일치한다고 본다. 핵심은 절대 가격수준이 아니라 물가와 환율의 변화율 관계이다.
3번: O. 무역장벽, 운송비, 비거래재 존재와 같은 마찰이 있으면 동일 재화의 국제 가격이 완전히 같아지기 어렵다. 따라서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은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4번: X. 틀린 부분은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면 절대적 구매력평가설도 성립한다"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면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이 도출될 수 있지만,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한다고 해서 절대적 구매력평가설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포인트

절대적 구매력평가설과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을 둘 다 구매력평가설이라는 이름만으로 같은 강도의 명제로 보면 4번에 속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절대는 가격수준, 상대는 변화율이라는 차이를 흐리고 포함관계를 거꾸로 제시한 데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구매력평가설 문제가 나오면 먼저 가격수준을 직접 같게 보는지, 아니면 물가와 환율의 변동률 관계를 보는지부터 구분한다. 그다음 절대가 상대보다 강한 명제라는 점을 대입하면 포함관계를 뒤집은 선지를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절대는 가격수준, 상대는 변화율이며, 강한 것은 절대이고 넓게 성립하는 것은 상대이다.

NoteBase

문 18.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세부과는 국내에서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제수지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
ㄴ. 관세부과는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연결되어 재정수입 효과를 가져온다.
ㄷ. 관세부과는 소비자 잉여의 일부분이 생산자 잉여로 전환되어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ㄹ. 관세부과는 수입품의 국내 시장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의 고용감소 효과를 가져온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관세부과가 국내생산, 수입량, 정부재정, 잉여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올려 국내시장에서 수입품의 경쟁력을 낮추는 조치이다. 그 결과 국내가격은 상승하고 국내생산은 증가하며 수입량은 감소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관세수입을 얻고, 소비자 잉여의 일부는 생산자 잉여와 정부수입으로 이전된다.

선지별 해설

1번 X: 1번은 ㄱ, ㄷ의 조합이다. ㄷ은 맞지만 ㄱ이 틀려서 오답이다. ㄱ의 틀린 부분은 "국내에서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입량이 증가"라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관세부과 시 국내가격 상승으로 국내생산은 증가하고 수입량은 감소하므로 국제수지 개선 효과가 논의된다.
2번 X: 2번은 ㄱ, ㄹ의 조합인데 ㄱ과 ㄹ이 모두 틀리므로 오답이다. ㄱ은 앞서 본 것처럼 생산 감소와 수입 증가가 아니라 생산 증가와 수입 감소가 맞다. ㄹ의 틀린 부분은 "국내산업의 고용감소 효과"이다. 실제로는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산업은 보호를 받아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는 방향의 효과가 나타난다.
3번 O: ㄴ, ㄷ의 조합으로 둘 다 맞다. ㄴ은 관세가 정부의 세입으로 귀속되어 재정수입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옳다. ㄷ도 관세로 국내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잉여의 일부가 생산자 잉여와 정부의 관세수입으로 이전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옳다.
4번 X: 4번은 ㄴ, ㄹ의 조합이다. ㄴ은 맞지만 ㄹ이 틀려서 오답이다. ㄹ의 "고용감소"를 "고용증가"로 고쳐야 옳은 설명이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관세의 보호효과와 재정수입 효과를 함께 묻는 전형적 문제이다. 특히 ㄱ의 "생산량 감소, 수입량 증가"와 ㄹ의 "고용감소"처럼 관세의 방향을 자유무역 효과와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헷갈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관세가 붙으면 먼저 수입품 가격 상승을 떠올린다. 그다음 국내가격 상승, 국내생산 증가, 국내소비 감소, 수입 감소의 흐름을 연결하면 정부재정수입과 소비자 잉여의 이전 여부까지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관세는 가격 상승, 국내생산 증가, 수입 감소, 정부수입 발생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9. 해상보험에서 위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부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목적물에 잔존하는 일체의 이익과 피보험목적물에 부수하는 소유권에 기인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한다.

② 위부의 통지는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손해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수취한 후 부당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③ 위부의 수락은 보험자가 명시적 · 묵시적 행위로 할 수 있으며, 위부 통지 후의 보험자의 단순한 침묵은 위부의 수락이 아니다.

④ 위부의 행사는 피보험목적물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하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해상보험상 위부의 통지, 행사 요건, 승인,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위부 통지의 방식과 기간, 위부의 전부성, 위부의 효과를 정확히 나누는 데 있다.

용어 풀이

위부는 추정전손 등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 전부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상법상 위부 통지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발송하면 된다. 위부는 원칙적으로 무조건이어야 하고 보험의 목적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위부의 원인이 일부에 대해서만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유효한 위부가 있으면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상법상 위부의 효과에 맞는 설명이다. 유효한 위부가 있으면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므로 잔존이익과 부수권리도 함께 이전된다.

② X
상법 제713조는 위부 통지를 상당한 기간 내에 발송하도록 할 뿐, 서면에 의해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또한 문제의 "손해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수취한 후 부당한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우리 상법 문언과 다르다.
틀린 표현: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손해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수취한 후 부당한 지체 없이"
올바른 표현: "위부의 통지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발송하면 되며, 서면에 한정되지 않는다."

③ O
위부의 승인은 보험자의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행위에 의한 묵시적 승인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위부 통지 후 보험자의 단순한 침묵만으로는 승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O
상법 제714조 제2항의 내용과 같다. 위부는 원칙적으로 피보험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나, 위부의 원인이 일부에 대해서만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는 영국 해상보험법식 표현과 우리 상법 문언을 섞어 놓은 함정이다. 위부 문제에서 "서면"이나 "부당한 지체 없이" 같은 문구가 보이면 먼저 우리 상법의 문언인 "상당한 기간 내 발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위부 문제는 먼저 통지 규정인지, 행사 요건인지, 효과 규정인지부터 나누어 본다. 통지는 기간 문언을 보고, 행사 요건은 무조건성과 전부성을 보고, 효과는 보험자에게 권리가 이전되는지로 판단하면 정리가 된다.

암기 포인트

위부는 통지, 전부성, 권리이전의 세 축으로 정리된다. 통지는 상당한 기간, 행사는 원칙적 전부, 효과는 모든 권리 이전이다.

NoteBase

문 20. 중재(Arbi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재는 당사자가 중재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분쟁 내용에 적합한 전문가에 의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② 중재는 뉴욕협약에 가입한 체약국 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 집행을 보장하므로 그 실효성이 인정된다.

③ 분쟁당사자가 소송 대신 중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

④ 중재 심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중재의 기본 성질 가운데 중재인 선택, 외국중재판정의 집행 가능성, 중재합의의 방식, 심리의 공개 여부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용어 풀이

중재합의는 당사자가 분쟁을 법원 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해결하기로 약정한 합의이다.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국제적으로 뒷받침하는 협약이다.

핵심 구분

중재는 당사자 자치가 강하여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고, 중재를 이용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중재판정은 뉴욕협약을 통해 다른 체약국에서도 승인·집행될 수 있다. 반면 심리는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기업비밀 보호에 유리하다.

선지별 해설

1번 O: 중재는 당사자가 중재인을 합의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분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중재인에게 판단을 맡길 수 있다. 중재의 장점인 전문성 확보를 설명한 선지이다.
2번 O: 뉴욕협약은 체약국 사이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적 기반이므로 국제거래에서 중재의 실효성을 높인다. 절대적 보장이라는 표현까지는 아니더라도 실효성을 인정하는 취지는 옳다.
3번 O: 중재로 소송을 대체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중재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구두 합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면 틀린다.
4번 X: 틀린 표현은 '중재 심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이다. 올바르게는 중재 심리는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거래정보 보호에 유리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4번은 법원 소송의 공개주의를 중재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착각을 노린 선지이다. 소송은 공개재판주의가 원칙이지만, 중재는 비공개 절차라는 점이 핵심 차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재 문제는 먼저 당사자 자치, 서면 중재합의, 판정의 국제집행 가능성, 비공개 심리라는 네 가지 기본 특징을 대조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특히 공개주의인지 비공개성인지가 나오면 법원 소송과 중재를 구분해 보면 된다.

암기 포인트

중재는 서면합의와 비공개 심리, 뉴욕협약에 따른 국제집행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21. WTO 협정의 기본원칙 중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로만 연결한 것은?

① 정부조달-보조금-개도국에 대한 예외

② 반덤핑-자유무역지대-개도국에 대한 예외

③ 관세동맹-국제수지의 옹호를 위한 제한-긴급수입제한조치

④ 보조금-자유무역지대-긴급수입제한조치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WTO 비차별원칙 중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와 최혜국대우 예외 및 무역구제수단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정부조달·국내보조금·개도국 특례와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반덤핑·국제수지 보호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의 소속 범주를 가르는 것이다.

용어 풀이

내국민대우 = 수입품이 통관 후에는 내부세와 국내규제에서 국내상품보다 불리하게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최혜국대우 = 한 회원국에 부여한 유리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에도 무차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는 수입품에 대한 내부세와 국내규제를 국내상품과 동등하게 적용하게 하는 원칙이다. 다만 GATT 제3조 제8항은 정부조달과 국내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예외로 둔다. WTO 체제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차등대우도 일정한 특례로 인정한다. 반면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은 최혜국대우의 예외이고, 반덤핑과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은 수입규제 또는 공정경쟁 관련 조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정부조달은 GATT 제3조 제8항 (a)에 따라 내국민대우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표적 예외이다.
- 보조금은 GATT 제3조 제8항 (b)에 따라 국내생산자에게만 지급하는 보조금을 허용하므로 내국민대우의 예외로 정리된다.
- 개도국에 대한 예외도 WTO 협정의 특별·차등대우로서 비차별원칙에 대한 특례 범주에 속하므로, 이 선지는 내국민대우 예외 쪽으로만 연결한 묶음으로 볼 수 있다.

② X
- 반덤핑은 덤핑에 대한 무역구제수단이지 내국민대우 예외가 아니다.
- 자유무역지대는 역내 회원국끼리만 특혜를 주는 지역무역협정으로서 최혜국대우의 예외이다.
- 틀린 표현은 "반덤핑-자유무역지대"를 내국민대우 예외처럼 묶은 부분이다.
- 올바른 표현은 "반덤핑은 공정경쟁 관련 무역구제이고, 자유무역지대는 최혜국대우 예외이다"이다.

③ X
-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대와 마찬가지로 지역무역협정이므로 최혜국대우의 예외이다.
- 국제수지의 옹호를 위한 제한은 국제수지 악화를 막기 위한 수입제한 허용 사유이고,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세이프가드이다. 둘 다 내국민대우 예외가 아니다.
- 틀린 표현은 "관세동맹-국제수지의 옹호를 위한 제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한 묶음으로 내국민대우 예외화한 부분이다.
- 올바른 표현은 "관세동맹은 최혜국대우 예외이고, 국제수지 보호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제한 관련 예외이다"이다.

④ X
- 보조금만 내국민대우 예외에 해당하고, 자유무역지대와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다른 범주이다.
- 자유무역지대는 최혜국대우 예외이고,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급증한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허용되는 세이프가드이다.
- 틀린 표현은 "자유무역지대-긴급수입제한조치"를 보조금과 같은 범주로 연결한 부분이다.
- 올바른 표현은 "보조금은 내국민대우 예외이지만 자유무역지대는 최혜국대우 예외이고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세이프가드이다"이다.

오답 포인트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은 지역무역협정이므로 최혜국대우 예외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반덤핑과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모두 수입을 제어하는 조치이지만, 내국민대우의 예외가 아니라 불공정무역 대응이나 세이프가드라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정부조달과 국내보조금이 보이면 먼저 내국민대우 예외를 떠올린다.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이 보이면 최혜국대우 예외로 분류하고, 반덤핑·국제수지 보호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는 무역구제나 수입제한 허용 사유로 따로 분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내국민대우 예외는 정부조달·국내보조금이고,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은 최혜국대우 예외이며, 반덤핑·세이프가드는 무역구제이다.

NoteBase

문 2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상 계약해제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매수인은 계약해제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계약과 CISG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한다.
ㄴ. 계약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계약상 공급 또는 지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매수인은 자신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발생된 모든 이익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ㄹ. 계약의 해제는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 또는 해제의 결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그 밖의 계약조항에 영향을 미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CISG상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계약해제로 소멸하는 의무와 그대로 남는 권리, 그리고 원상회복과 이익반환의 범위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계약해제 = 계약을 장래를 향해 끝내고 서로 받은 급부를 돌려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제수단이다.
원상회복 = 이미 공급하거나 지급한 것을 서로 반환하는 것이다.

핵심 구분

CISG는 계약해제가 되면 본래의 이행의무는 해방시키되, 손해배상청구권과 분쟁해결조항처럼 해제 후에도 필요한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이미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는 자신이 공급하거나 지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이 물품을 반환해야 하면 그 물품에서 얻은 이익도 매도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ㄱ은 옳다. 매수인이 계약해제권을 잃더라도 계약과 CISG에 따른 다른 구제수단은 남고, 손해배상청구도 유지된다.
ㄷ은 옳다. 매수인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그 물품에서 얻은 이익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X
ㄱ은 옳지만 ㄹ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틀린 표현: "계약의 해제는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 또는 해제의 결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그 밖의 계약조항에 영향을 미친다."
올바른 표현: 계약의 해제는 그러한 분쟁해결조항이나 해제의 효과를 규율하는 계약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X
ㄷ은 옳지만 ㄴ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틀린 표현: "계약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계약상 공급 또는 지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올바른 표현: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당사자는 자신이 공급 또는 지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X
ㄴ과 ㄹ이 모두 틀리므로 오답이다.
틀린 표현: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의 해제는 분쟁해결조항 등에 영향을 미친다."
올바른 표현: 일부 이행한 당사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해제는 분쟁해결조항이나 해제 후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계약해제를 "모든 권리관계를 전부 소멸시키는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CISG의 계약해제는 본래 이행의무는 해방시키지만 손해배상청구권, 분쟁해결조항, 원상회복관계는 별도로 남겨 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계약해제 효과 문제는 먼저 이행의무가 사라지는지, 손해배상이나 분쟁해결조항 같은 후속 권리의무가 남는지로 나누어 본다. 그다음 이미 주고받은 급부의 반환이 가능한지와 반환 대상 물품에서 생긴 이익까지 정산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CISG 계약해제는 이행의무는 풀고, 손해배상·분쟁해결조항·원상회복은 남긴다.

NoteBase

문 23. Incoterms® 2020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DPU조건에서 당사자들은 매도인이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DPU조건을 피하고 그 대신 DAP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CIP조건에서 매도인은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 따른 광범위한 담보조건으로 부보할 의무가 있으나, 당사자들은 더 낮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③ CPT, CIP, CFR, CIF조건이 사용되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선택된 당해 규칙에 명시된 방법으로 운송인에게 교부하는 때가 아니라, 목적지에 도착할 때에 그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④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최소담보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되지만, 매수인이 보다 넓은 담보조건을 원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보험을 들어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Incoterms 2020에서 DPU와 DAP의 양하의무, CIP와 CIF의 보험수준, C조건의 위험이전·인도시점을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DPU는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하한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이고, DAP는 목적지 도착물품을 양하 전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이다. CIP는 매도인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까지 체결하는 조건으로 원칙적으로 협회적하약관 A약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넓은 담보를 제공한다. CIF는 해상·내수로 전용 조건으로 최소담보인 협회적하약관 C약관이 기본이다. C조건의 공통점은 매도인이 운임을 목적지까지 부담하더라도 위험이전과 인도완료는 목적지 도착 시점이 아니라 선적지 측 인도지점에서 먼저 발생한다는 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DPU는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양하까지 마쳐야 하는 유일한 조건이다. 따라서 매도인이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DPU 대신 DAP를 택하는 설명이 맞다.
② O: CIP에서는 매도인이 협회적하약관 A약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넓은 담보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면 그보다 낮은 수준의 담보로 정할 수 있으므로 선지의 설명은 맞다.
③ X: 틀린 부분은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 그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는 표현이다. CPT·CIP는 물품을 첫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CFR·CIF는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한 때 인도의무를 이행한다. 목적지 도착은 운임 부담의 종점일 뿐 인도완료 시점이 아니다.
④ O: CIF는 최소담보인 협회적하약관 C약관 수준의 보험이 기본이다. 매수인이 더 넓은 담보를 원하면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추가 담보를 합의하거나, 별도로 자신의 추가보험을 들어야 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C조건의 named place of destination을 보고 위험이전과 인도시점도 목적지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C조건은 매도인이 운송비를 목적지까지 부담해도 위험이전은 훨씬 이른 시점에 일어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Incoterms 문제는 인도시점, 위험이전시점, 운송비 부담 종점을 분리해서 본다. D조건은 목적지 인도형이고, C조건은 운임 선지급형이지만 위험은 선적지 측 인도지점에서 이전된다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DPU는 목적지 양하까지 매도인, DAP는 양하 전까지 매도인, CIP는 A약관, CIF는 C약관, C조건의 위험은 목적지 도착 전에 이전된다.

NoteBase

문 24. 해상보험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신협회적하약관(ICC(2009))의 ICC(B)조건에서는 ICC(C)조건에서 담보하지 않는 추락손을 담보한다.

② 공동해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아닌 통상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있어야 한다.

③ 신협회적하약관(ICC(2009))의 ICC(B)조건에서는 악천후로 인해 갑판적화물이 적·양하 과정에서 갑판 밖 해수에 추락하는 경우, 이를 보상한다.

④ 손해방지비용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급한 비용뿐만 아니라 제3자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ICC(B)와 ICC(C)의 담보범위 차이,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ICC(B)는 ICC(C)보다 담보범위가 넓어 ICC(C) 담보위험에 더해 다음을 추가로 담보한다. 제1.2조는 지진·화산의 분화·낙뢰(1.2.1), 갑판유실 즉 washing overboard(1.2.2), 선박·부선·선창·운송용구·컨테이너·보관장소 등으로의 해수·호수·강물의 유입(1.2.3)을 담보한다. 제1.3조는 선적 또는 양하 작업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서 떨어진 매 포장단위의 전손(total loss of any package lost overboard or dropped whilst loading on to, or unloading from, vessel or craft)을 담보한다. 여기서 washing overboard(1.2.2)는 항해 중 악천후로 갑판상 화물이 바다로 휩쓸려 나가는 경우이고, 1.3조의 추락전손은 적·양하 작업 중의 추락으로서 포장단위 전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구분된다. 공동해손은 공동의 안전을 위한 비상조치로서 이례적 희생이나 특별비용이어야 한다.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자와 그 사용인·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ICC(B)는 ICC(C) 담보위험에 더해 선적 또는 양하 중 매 포장단위의 추락전손을 추가로 담보한다. 따라서 ICC(C)에서 담보하지 않는 추락손을 ICC(B)가 담보한다는 진술은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아닌 통상적인 희생이나 비용"이다. 공동해손은 공동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이고 합리적으로 행한 비상조치에서 발생한 이례적 희생 또는 특별비용이어야 한다. 올바르게는 "공동해손이 성립하려면 이례적인 희생이나 특별비용이 있어야 한다"이다.

③ X
선지는 "적·양하 과정에서 갑판 밖 해수에 추락"이라고 적·양하 작업 중의 추락을 말하므로, 이는 항해 중 갑판유실을 담보하는 제1.2.2조 washing overboard가 아니라 제1.3조(선적·양하 중 추락)의 영역이다. 그런데 제1.3조가 담보하는 것은 적·양하 작업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서 떨어진 매 포장단위의 "전손(total loss of any package)"에 한정된다. 선지는 포장단위 전손이라는 요건을 빠뜨린 채 추락하면 "이를 보상한다"고 무조건적으로 단정하였으므로 부정확하다. 즉 적·양하 중 추락이라도 포장단위 전손이 아니면 ICC(B)에서 담보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ICC(B)는 선적 또는 양하 중 바다에 떨어진 매 포장단위의 전손을 담보한다"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제3자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이다.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대리인이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중심이다. 제3자가 임의로 지출한 비용까지 당연히 손해방지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올바르게는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 등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공동해손의 핵심요건인 "이례적 희생·특별비용"을 "통상적 비용"으로 바꿔 놓은 전형적 함정이다. ③은 적·양하 중 추락(제1.3조)을 다루면서도 핵심요건인 "매 포장단위의 전손"을 빠뜨려 무조건 보상하는 것처럼 단정했고(항해 중 갑판유실을 담보하는 제1.2.2조 washing overboard와도 구분된다), ④는 손해방지비용의 주체를 제3자 일반까지 넓혀 범위를 흐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상보험 선지는 먼저 담보범위를 약관별로 나눈다. ICC(C) 기본위험인지, ICC(B) 추가위험인지, 전손 요건이 붙는지부터 본다. 공동해손은 "공동의 안전을 위한 이례적 희생·특별비용"인지로 판단하고, 손해방지비용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지출했는지로 범위를 구별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ICC(B)=ICC(C)+추락전손 등 추가담보, 공동해손=이례적 희생, 손해방지비용=피보험자 측의 합리적 지출이다.

NoteBase

문 25. ESG 경영 구성요소 중 거버넌스(Governance) 요소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기업윤리
ㄴ. 전체 공급망 관리
ㄷ. 공정경쟁
ㄹ. 근로자 안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ESG의 거버넌스(G)와 사회(S) 요소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거버넌스(G)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윤리, 준법, 공정경쟁처럼 회사를 어떻게 통제하고 운영하는가에 관한 영역이다.
사회(S)는 근로자 안전, 인권, 공급망 관리처럼 사람과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영역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ㄱ 기업윤리는 경영 투명성과 윤리의 문제이므로 거버넌스에 해당한다. 그러나 ㄴ 전체 공급망 관리는 협력사 노동, 인권, 안전까지 포함한 이해관계자 관리 성격이 강하므로 사회(S) 요소이다. 틀린 부분은 ㄴ의 포함이다. 올바르게는 ㄱ, ㄷ이다.
2번 O: ㄱ 기업윤리와 ㄷ 공정경쟁은 모두 회사의 통제 체계와 윤리적 경영 질서를 묻는 항목이므로 거버넌스 요소에 해당한다.
3번 X: ㄴ 전체 공급망 관리와 ㄹ 근로자 안전은 모두 사람, 노동, 안전 이슈이므로 사회(S) 요소이다. 틀린 부분은 두 항목을 거버넌스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거버넌스 요소를 묶은 ㄱ, ㄷ이다.
4번 X: ㄷ 공정경쟁은 거버넌스가 맞지만 ㄹ 근로자 안전은 근로환경과 산업안전의 문제이므로 사회(S) 요소이다. 틀린 부분은 ㄹ의 포함이다. 올바르게는 ㄹ 대신 ㄱ이 들어가 ㄱ, ㄷ이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공급망 관리와 근로자 안전은 기업 운영과 관련되어 보여 거버넌스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ESG에서는 사람과 노동, 이해관계자 영향에 초점을 두면 사회(S)로 분류한다. 반대로 기업윤리와 공정경쟁은 경영 질서와 통제 기준이므로 거버넌스(G)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기준어가 윤리, 준법, 경쟁질서, 이사회, 내부통제처럼 회사의 통제 구조에 있으면 거버넌스(G)로 본다. 근로자, 안전, 인권, 공급망, 지역사회처럼 사람과 이해관계자 영향에 있으면 사회(S)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G는 경영질서와 통제, S는 사람과 안전이다.

NoteBase